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수 신 건설신기술지정업체 대표
(참 조) 신기술 담당자
제 목 2016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신고안내

1. 건설신기술의 활용촉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귀 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건설신기술 개발자 및 사용자는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다음해 2월 15일까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업무위탁기관)로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신기술 개발자 및 사용자는 위 관련근거에 따라 법정기일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된 자료는 아래와 같이 각 종 평가실적으로 활용되오니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불임 자료를 숙지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보호기간 연장 시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 신고 된 활용실적만을 연장기간 평가기준에 적용
- 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기술능력 평가 시 활용실적 가점
- 다.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평가지 활용실적 가점
- 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활용실적 공개
- 마.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기관에 활용실적 제공
- 바. 정부 통계자료 및 홍보자료 등으로 활용
- 사. 발주청 및 설계용역사에서 공법선정시 활용실적 반영

3. 특히 건설신기술 허위실적(신기술 범위 외 실적, 지분율 오류, 비자발적임에도 자발적으로 신고, 보호기간내에 설계 또는 시공하지 않음, 개발자가 보호기간내에 미신고, 지속적인 오타, 오기 등)이 매년 발생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는 업체 및 보호기간 연장시 보호기간 단축 사례가 발생하고 있사오니 첨부된 실적신고 안내서를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신고시 회비납부 후 접수증을 발급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1. 기본회비 (가입비)	- 중소기업 : 85만원(150만원) - 대기업 : 300만원(400만원)
2. 실적신고 수수료	- 10억원이하 : 6/10,000 - 1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 600천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10,000 - 5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 2,600천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10,000 - 100억원 초과 : 4,600천원+100억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3/10,000

※ 비회원사의 경우 프로그램 사용료 50만원 추가 징수

※ 기본회비 납부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업체는 반드시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상회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활용실적 신고기간 중 휴일 및 토요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실적신고 프로그램 매뉴얼은 “협회홈페이지” ⇒ “실적신고”로 들어가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우리협회에서는 지난 2016. 11. 10.(금) 국회도서관에서 「건설신기술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토론회 결과를 담은 「정책토론회 자료집」을 발간하여 국토교통위원회를 통해 각종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2017년 다이어리」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배포하오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신고 안내서 1부
2. 건설신기술 활성화 정책토론회 자료집 1부
3. 2017 협회 다이어리 1부. 끝.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과장 정규오 차장 조문환 사무국장 박길현 회장 윤학수

시행 신기협 제 16 - 203 호 (2016. 12. 7) 접수

우 137-743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339, 401(잠원동, 논현빌딩) / <http://www.kcnet.or.kr>

전화번호 02-516-2490 팩스번호 02-516-5090 / kcnet@kcnet.or.kr